

국내·외 PL 사고 사례

7월 부터 제조물 책임법이 적용됨에 따라 PL에 대한 관심이 깊어지고 있다.
과연 PL 사고가 어떤 형태가 있는지 사례를 통해 알아본다.

국내 PL 사고 사례

1 살충제사건

오이용 살충제를 수박에 뿌려 피해를 입은 사고에 대하여 피해자가 패소함.-대구지법

2 콜라병 폭발사건

콜라병 제조회사의 고용원이 콜라의 탄산가스를 과다하게 주입시켜 원고의 이를 들여다보려고 하는 순간 뚜껑이 폭발적으로 튀어 다친 사건으로 콜라병 제조회사는 그 직원의 행위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판결.-대법원

3 채혈병사건

수혈 도중 환자가 쇼크로 사망한 사건으로, 원고의 사망원인이 독성물질에 의한 것으로 피고인 납품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대법원은 채혈병에서 검출된 대장균이 쇼크를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단정하기에 미흡하며, 당초부터 병이 오염되어 있었다고 단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고, 납품회사가 제조한 채혈병을 멸균등의 시험을 하지 않고 납품한 잘못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피고인 납품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치 않았다.-대법원

4 닭배합사료사건 I

불순사료를 먹고 닭이 폐사한 사건에 대하여 과실 및 인과관계 추정의 법리를 적용하여 제조업자의 책임을 인정함.-대법원

5 닭배합사료사건 II

양계업자가 배합사료를 구입하여 닭의 사료를 사용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닭이 빈사하게 된 사건으로 법원은 닭의 빈사와 배합사료의 제조판매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인하였음.-대법원

6 이동급식빵부패사건

서울시내 초등학교에 배달된 급식빵이 부패되어 집단식중독을 일으킨 사건으로서 관련업체에 대하여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인정함.-대법원

7 질소오용사건

병원에서 환자수술을 위하여 전신마취시 수술환자에게 질소를 산소로 오인하여 주입함으로써 사망케 한 사건에 대하여 가스공급업자에게 표시 및 설명상의 결함에 근거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함.-대법원

8 불법장난감주사기사건

한 어린이가 문방구점에서 불량 장난감 주사기를 구입하여 가지고 놀다가 눈을 다친 사건으로 완구용 주사기가 주사침을 주사기 몸통에 부착시키는 합성수지부분이 견고하지 못하여 제조상의 잘못으로 인한 제품의 현저한 결함이 있고, 위 결함을 제조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을 정도이면 제조자는 동주사기의 사용에 수반되는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함.-대법원

9 냉장고 병꽃이사건

냉장고 병꽃이의 불량으로 토닉워터병이 떨어져 깨어진 유리조각이 눈에 튀어 부상한 사건으로서 법원은 냉장고 제조회사의 과실책임을 인정함.

-대전지법

10 선박엔진사건

조선회사가 주기관을 인도받아 건조한 선박이 원양에서 조업 중 주기관의 결함으로 엔진 자체의 기능이 저하되어 조업을 중지함으로써 손해를 입게 되어,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으로 법원은 00조선에 대해 동피고가 수급인으로서 도급인인 원고에 대하여 바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하고, 주기관에 부품을 조치하지 아니한 잘못된 엔진자체의 기능을 저하시킴에 불과한 것이고, 이를 영업상의 과실에 대하여까지 제조물책임을 확대하여 물을 수 없다 하여 책임을 부인하였음. -대법원

11 노래방기기(스토어)사건

스토어를 매입하여 원고회사 스스로 10여종의 주변기기를 부착하고 노래방기기 세트의 판매가격을 결정하여 노래방기기 세트를 소비자에게 판매하였으나, 원고회사가 피고회사를 믿고 노래방기기의 판매·설치 사업을 하다가 피고회사가 제조한 스토어에 근본적으로 중대한 결함이 있어서 노래방기기의 판매·설치 사업을 중단하게 되어 손실을 입은 사건으로 제조물에 상품적합성이 결여되어 제조물 그 자체에 발생한 손해는 제조물책임이론의 적용대상이 아니다라고 판결. -대법원

12 자동차 에어백사건 I

에어백이 장착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주차된 화물차를 추돌한 사안에서 에어백의 미작동은 에어백이 작동하지 않는 사례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에어백의 결함으로 인한 사고라고 볼 수 있으며, 피해자의 과속운전(법정속도가 60km/h 인데 120km/h로 운전) 및 에어백이 정상 작동되었다더라도 손해발생을 100% 막을 수 없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과실을 40% 인정하여 과실상계함. -대구지법

13 자동차 에어백사건 II

에어백이 작동할 수 있는 정면 내지 전방 30도 이내를 벗어나 자동차에 충격이 가해지는 경우 충격시의 속도와 관계없이 에어백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으로 보아 에어백에 설계, 제조상의 결함이 있었다고 추인하기 어려우므로 사고시 자동차 제조사는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판시. -서울지법

14 칼라TV 화재사건

물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제조자는 그 제품의 구조, 품질, 성능 등에 있어서 현대의 기술수준과 경제성에 비추어 기대 가능한 범위 내의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춘 제품을 제조하여야 할 책임이 있고, 이러한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추지 못한 결함 내지 하자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2. 11. 24. 92다18139) 피고는 이 사건 텔레비전의 제조자로서 텔레비전의 결함으로 인한 폭발사고로 인하여 이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 -서울고법

국외 PL 사고 사례

1 파괴된 연마석 날에 다친 사건

콘크리트 바닥에 파가 제조한 연마석으로 연삭 작업을 하던 중 연마석의 날이 부러지면서 원고의 목(정맥)에 부러진 날의 조각이 꽂혀서 목을 다쳐 제조업자와 판매업자에게 피해보상금으로 US\$ 500,000을 청구하였으나 쌍방합의로 US\$ 400,000이 지급되어 종결되었음.

-Washington D.C.

2 무선전화기의 이상소음 발생

소매점에서 무선전화기를 구입하여 사용하던 중 전화기에서 발생한 갑작스런 소음으로 인하여 고막 상해가 발생. 피해자들이 판매업자인 A사를 상대로 제소하였고, 제조업자 D사측은 피해자측과 합의하여 판매업자와 제조업자가 각각 US\$ 75,000씩, 총 US\$ 150,000을 지급하고 종결됨.

-New York

3 의류에 의한 피부염

피해자가 셔츠를 구입하여 입은 후 피부염이 발생하여 세탁 후 다시 한번 입었으나 피부염이 더 심해져 사고제품의 재질상의 결함을 이유로 판매업자와 제조업자를 상대로 제소하였으나 문제의 제품을 입수하여 검사해 본 결과 제조업자인 D사 제품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어 종결되었음.

-Georgia 주

4 가스라이터에 의한 화상

가스라이터 제조업자 S사에 대한 소송의 경우는 원고가 담배를 피우기 위해 소지하고 있던 가스라이터를 켜는 순간 불꽃이 갑자기 높아져 한쪽 눈에 부상을 입어 불량제품 판매에 대한 배상책임과 제품의 안정성에 대한 명시·묵시적 보증위반이라 주장하고 불량제품을 판매했다는 이유로 징벌적 손해배상(Punitive Damage)까지 청구하였으나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의 검진결과, 시력이 지장이 없음이 판명되어 합의금으로 US\$ 18,000을 지급하고 종결되었음. -Philadelphia

5 텐트내에서의 질식사

야영 중 텐트에서 랜턴을 켜고 잠자던 남녀 1쌍이 랜턴에서 계속 발생한 일산화탄소에 질식사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사고로 피해자측 가족들은 랜턴 및 텐트를 제조한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함. 소송을 제기하게 된

근거는 텐트를 제조한 D사의 제품에 부착된 선전문구에서는 사고제품이 통풍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안전장치가 없는, 즉 통풍이 되지 않는 텐트였었기 때문임. 그 후 텐트 제조회사인 D사에서는 사고제품에 대해 면밀히 조사해 본 결과 수입업자(판매업자)가 D사에게 요청했던 텐트의 재질, 설계 및 지지대로 제품이 제조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으며, 만일 법원의 판결에 따라 경우 엄청난 소송비용과 판결금액이 예상됨으로 피해자측 가족들과 합의한 결과, 합의금으로 US\$ 1,800,000을 지불하였으며 이중 텐트 제조업자인 D사의 과실에 대한 금액으로 US\$ 800,000을 지급하고 사건을 종결함.

-New Jersey

6 텐트의 화재사건

피해자측 소년 2명이, 자가 제조한 텐트를 설치하고 잠을 자던 중 Camp Fire가 계속되고 있는 중에 흘러내린 휘발유로 인하여 텐트에 불이 붙어 피해자들이 사망한 사고로 제품의 재질상의 문제 즉, 너무 쉽게 인화되는 성질 때문에 피해자들이 사고당시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또한 출구가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설계상의 결함이 있었다고 주장하여 US\$ 10,000,000을 손해배상 청구금액으로 요구하였으나 사용자들의 부주의가 화재의 주된 요인임을 근거로 피해자측 보호자들과 US\$ 65,000에 합의하여 종결되었음. -Virginia

7 헬멧 불량에 의한 사고 I

헬멧을 제조하여 수출한 H사의 경우, 피해자가 눈으로 덮힌 Illinois주 공립학교 운동장에서 오토바이를 타던 중 눈더미에 넘어지면서 고개가 앞으로 숙여져 쓰고 있던 헬멧의 턱받침 부분이 부러져 오른쪽 쇄골에 박힌 사고로 헬멧의 턱아래 부분이 딱딱하고 고정되어 있지 않게 설계된 것이 사고의 주된 요인으로 주장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피고측은 사고에 대한 책임이 피해자 본인의 운전과실에 있음을 주장하여 원고측은 US\$

25,000을 요구하였으나 US\$ 3,000에 합의하여 종결하였음.-California

8 헬멧 불량에 의한 사고 II

피해자가 가족 및 친지들과 함께 Medina 호수에서 모터보트 경주를 즐기던 중 돌발적인 사고로 보트에서 이탈한 후 물위로 떨어졌을 때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헬멧이 벗겨진 결과 그 충격으로 인한 사망사고로 사고당시 헬멧에 대한 설계상의 결함 및 적절한 지시나 경고에 대한 주의를 소홀히 하여 그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제품 제조업자인 K사를 상대로 US\$ 13,000,000의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피고측에서는 헬멧이 모터보트용이 아닌 점, 당시 보트 속도이면 헬멧의 착용여부와는 관계없이 사망했을 것이라는 점을 부각시키면서, 한편으론 계속적인 소송 진행 시 소요될 소송비용과 패소할 경우의 판결금액등을 감안하여 피해자 측 가족과 US\$ 500,000에 합의하고 종결하였음.-Texas

9 가스라이터에 위험 경고문구 없음

집안에서 어린아이가 가스라이터를 소지하고 있다 가라이터의 불을 켜는데 그 불꽃이 어린아이의 셔츠에 옮겨 붙어 상체에 3도 화상을 입음에 따라 어린이의 보호자가 가스라이터의 제조업자인 S산업에 소송을 제기했다.소송근거는 어린이가 사용할 경우 위험하다는 경고문구가 없었다는 것에 대한 제조업자의 과실이 있다는 것으로 US\$ 650,000을 손해배상금으로 청구하였으나,라이터에 경고문구는 없었지만 피해자 부모측에서 아이가 가지고 놀 경우 위험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고,S사측에서도 법정에서 설 경우 피해자가 여아로 심한 화상을 입었다는 점에서 배심원들의 동정심을 유발, 불리한 평결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의류제조사 및 부모와의 예상과실비율을 따져 US\$ 300,000에 조속히 합의를 봄.-Illinois

10. 제품 사용법 미지도

피해자가 오토바이를 타고 교차로를 진행하던 중 좌회전하던 차량과 충돌하여 부상을 입고 헬멧의 판매업자와 제조업자인 I사에게 제품의 적절한 사용법을 가르쳐 주지 않은 것에 대한 과실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원고측이 자동차 사고에 기인한 자동차 운전자와 그 고용인 측으로부터 US\$ 800,000의 합의금을 받아 부대비용만 지급되고 종결됨.-Florida 

